
2025년 인천광역시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지원사업 관련서식

2025

目 次

서식 제 1호. [신청기업용] 지원신청서	1
서식 제 2호. [선정기업용] 원가분석 결과 변경 요청서	7
서식 제 3호. [선정기업용] 용역계약서	10
서식 제 4호. [선정기업용] 지원협약서	15
서식 제 5호. [선정기업용] 1차 지원금 지급신청서	16
서식 제 6호. [선정기업용] 2차 지원금 지급신청서	17
서식 제 7호. [선정기업용] 협약변경 요청서	18
서식 제 8호. [선정기업용] 결과보고서	19
서식 제 9호. [선정기업용]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23

※ 서식 제2호부터는 선정평가 후 선정된 과제만 작성

[서식 제1-1호] (참여기업, 제작기업용)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 지원신청서

신청분야 (택1)		☐ 금형제작 ☐ 워킹목업		과 제 명		예) 핸드폰 케이스 사출금형개발	
신청유형		신청유형 및 제출서류 안내 페이지 참고 후 기업 제품 신청유형 선택 (중복선택 불가)					
참 여 기 업	기업명				대표자명	기업형태 ☐ 개인 ☐ 법인	
	설립일	2001. 01	사업자번호	000-00-00000	법인번호	000000-0000000	
	대표자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19600101	핸드폰	대표자 핸드폰	
	기업주소					홈페이지	
	과제담당자	부 서 전 화		직 위 핸드폰		성 명 E-mail	
제 작 기 업	기업명				대표자명	기업형태 ☐ 개인 ☐ 법인	
	설립일	2001. 01	사업자번호	000-00-00000	법인번호	000000-0000000	
	대표자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19600101	핸드폰	대표자 핸드폰	
	기업주소					홈페이지	
	과제담당자	부 서 전 화		직 위 핸드폰		성 명 E-mail	
개발비용 (단위 : 원)		총 개발비 (A + B + C)		A 신청지원금 (A + B의 80% 이하)		B 기업부담금 (A + B의 20% 이상)	
		예) 34,375,000		예) 25,000,000		예) 6,250,000	
개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90일)					
가 점 항 목 (최대 6점)	2점	참여	☐ [2점] 최근 2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신규 참여기업				
	3점	참여	☐ [1점]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고용노동부 인증) ※ 유효기간 內 ☐ [1점]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 [1점] 원산지 인증 수출자(관세청장 또는 세관장)로 지정 받은 기업※ 유효기간 內 ☐ [1점] 산업통상자원부 굿디자인 선정기업 ※ 선정제품 활용한 개발 시 인정 ☐ [1점] 친환경 관련 인증 기업(환경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 유효기간 內 ☐ [1점] 인천광역시 비전기업 또는 유망중소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기업 ※ 유효기간 內 ☐ [1점]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 우수인증기업 ※ 유효기간 內 ☐ [1점]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인증기업 ※ 인증제품에 대한 개발 신청 시 인정 ☐ [1점] 인천광역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 (유효기간 : 수상일로부터 5년內) ☐ [1점] 전년도 인천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디자인경영교육 수료기업 ☐ [1점] 인천디자인교육센터(http://hrd.idsc.kr) 디자인교육 수료기업 (최근 2년이내) ☐ [1점] 신청과제 디자인목업 보유 참여기업 (목업 확인 시 적용)				
	1점	제작	☐ [1점] 인천지역 소재 제작기업				
	위와 같이 시제품개발지원사업을 신청하며 동사업과 관련한 제반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참여기업 / 대표자 : (인) 주관기관 / 대표자 :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신청유형 및 공통제출 서류안내

구 분	기업 제품 신청유형 참고 후 1-1호 작성 (중복선택 불가)		
신청유형	☐ 의료 및 실험실용 기구 ☐ 위생, 난방, 환기 및 공기조절기 ☐ 건축 유닛 및 건설 자재 ☐ 소방, 사고방지 및 구조용 장비 ☐ 계측기구, 검사기구 및 신호기구 ☐ 광학기계 ☐ 공구 및 철물류 ☐ 운송장비 ☐ 레코딩, 통신 및 데이터처리 기기 ☐ 전자제품 ☐ 조명기기 ☐ 가구 및 침구류 ☐ 생활용품(무동력제품) ☐ 주방용품 ☐ 욕실 / 미용용품 기기 ☐ 화장품,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 포장 및 용기 ☐ 식품 ☐ 기타 ☐ 인쇄 및 사무용 기계 ☐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 게임용품, 완구 ☐ 악기 ☐ 스포츠용품 ☐ 장식용품 ☐ 여행용품, 케이스, 캠핑용품 ☐ 낚시 및 살충 용품 ☐ 애완용품		
구 분	제출서류	체크	
참여기업	① 시제품개발 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서 (필수, 서식 제1-2 ~ 3호) 1부	☐ 확인	
	②-1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필수) ※ 발급년도 무관	☐ 확인	
	②-2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수) ※ 당해년도 발급본만 인정.		
	③ 참여기업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필수) (홈택스 발급 또는 세무사 및 회계사 확인) ○ 전년도 결산 신고 완료기업 : 2024년도 재무제표 ○ 전년도 결산 신고 미완료기업 : 2023년도 재무제표	☐ 확인	
	④ 참여기업 공장등록증명원 1부 (필수) ○ 한국산업단지공단 팩토리온 사이트 (http://www.factoryon.go.kr)에서 발급 가능 ※ 당해년도 발급본만 인정함. (발급수수료 무료) ○ 공장 미등록 시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제출 (건축물 용도 확인 : 공장, 제조업소 등) - 임대인 경우 임대 공장등록증명원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 공장관련 증빙서류 본점 소재지가 인천지역인 경우에만 인정함.	☐ 확인	
	⑤ 가점항목 증명서 각 1부 (해당기업 제출 시 가점적용) ※ 유효기간 확인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고용노동부)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중소벤처기업부) ○ 원산지 인증 :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서 (관세청장, 인천세관장) ○ 친환경 관련 인증 기업(환경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 비전기기업, 유망중소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인증서(인천광역시장) ○ 품질우수제품인증서 (인천광역시장) ○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 : 전담기관 자체 확인 ○ 굿디자인 선정기업 : 굿디자인 선정증 사본 ※ 굿디자인 선정제품에 대한 개발 신청 시 인정 ○ 디자인목업 보유기업 : 디자인목업 제출 ※ 사진 첨부 및 선정평가 지참 시 인정 ○ 신규 참여기업 : 전담기관 자체 확인 ○ 인천시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디자인경영교육 수료기업 : 전담기관 자체 확인 ○ 인천디자인교육센터 디자인교육 수료기업 : 전담기관 자체확인	☐ 확인	
	⑥ 참여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1부 (필수) ※ 유효기간 확인 ○ 국세 완납증명서 : 홈택스에서 발급 http://www.hometax.go.kr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24에서 발급 https://www.gov.kr/portal/main	☐ 확인	
	⑦ 시제품제작 도면 사본 1부 (필수) ※ 크기, 소재, 가공방식 등 기재된 시방서 PDF파일	☐ 확인	
	⑧ 제품디자인 3D 렌더링 이미지 4부 이상 (필수) PDF 파일	☐ 확인	
	⑨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필수, 서식 제1-4호)	☐ 확인	
⑩ 정보제공 동의서 (필수, 서식 제1-5호)	☐ 확인		
제작기업	①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수) ※ 당해년도 발급본만 인정함.	☐ 확인	
	② 제작기업 소개서 (자유양식) (필수) 1부 ○ 관련 개발실적, 보유시설 및 장비, 제작기업 위치, 매출액 등	☐ 확인	
	③ 제작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1부 (필수) ※ 유효기간 확인 ○ 국세 완납증명서 : 홈택스에서 발급 http://www.hometax.go.kr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24에서 발급 https://www.gov.kr/portal/main	☐ 확인	
	④ 가점항목 증명서 각 1부 (해당기업) ○ 인천지역 소재 제작기업 :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 확인	
	⑤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필수, 서식 제1-4호)	☐ 확인	
	⑥ 정보제공 동의서 (필수, 서식 제1-5호)	☐ 확인	

[서식 제1-2호](참여기업용)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 사업계획서

과 제 명					
참여기업명		제작기업명		신청분야	☐ 금형 ☐ 워킹목업
기업현황	※ 간략히 기재 - 기업연혁 - 생산품목 - 주요거래처				
매출현황 재무제표기준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예상)
	총 액	원	원	원	원
	수 출	원	원	원	원
	내 수	원	원	원	원
고용현황	고용인원	명	명	명	명
	디자이너 보유여부	디자이너 보유 여부 (☐ 예 ☐ 아니오)		디자이너 총 00명 ※ 디자이너 보유 시 (제품디자인 0명, 시각디자인 0명)	
수출지역					
브랜드 사용여부	자체 Brand 판매 (%) Brand Name () 상표등록 (☐ 출원 ☐ 등록 ☐ 해당없음.)		OEM Brand 판매 (%) Brand Name ()		
	디자인 등록여부		디자인등록 (☐ 출원 ☐ 등록) ※ 개발과제 디자인 결과물의 등록 여부 등록(출원)번호 : 예) 30-2019-1234567		
제품 용도 및 특성	※ 제품의 용도 및 특징점 기재				
기술현황	※ 본 과제에 적용할 참여기업 보유 기술 기재 (개발완료기술) - 독자적으로 보유한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 개발의 경우 : 관련 기술완료단계 소개 및 증빙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번호, 시험성적 결과 등 기술완료단계수준 기재) - 시장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의 경우 :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관련 모듈, 탑재 부품 소개 등				
제작공정 세부내용	공정방식	※ 사출, 압출, 프레스, 다이캐스팅, 진공성형 등 공정방식 기재			
	금형벌수	※ 계획하고 있는 금형벌수 수량 기재 (본 과제에 해당하는 금형벌수)			
판로계획 및 기대효과	※ 금형제작 완료 후 판로계획 및 지원사업 수혜를 통한 기대효과 기재				

[서식 제1-3호](참여기업용)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 예산계획서

※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지원사업 관리규정 제4장 13조 (사업비 계상) 참조
가. 총개발비 ※ 과제 선정 후 원가분석과정을 통해 금액 변동될 수 있음. (단위 : 원)

비 목		소요금액	비고	
제조원가	㉠ 재 료 비	15,000,000원	예) 금형벌수 : 총 3벌 (Left, Right, Top Cover)	
	㉡ 노 무 비	10,000,000원		
	㉢ 제조경비	1,000,000원	노무비의 10% ※ 경비율은 과제선정 후 변동가능	
	㉣ 외주가공비	700,000원	외주업체명 : OO정밀	
㉤ 일반관리비		1,650,000원	제조원가 (㉠+㉡+㉢+㉣) 의 7% 이내	
㉦ 제작기업 이윤		2,900,000원	(㉡노무비 + ㉢경비 + ㉤관리비) 의 25% 이내	
총 계		예) 31,250,000	市 지원금 (80% 이하)	기업부담금 (20% 이상)
			예) 25,000,000	예) 6,250,000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원가계산 방법기준 적용
나. 세부 개발비 (단위 : 원)

제 조 원 가	㉠ 재료비	재료명	재질	중량(Kg)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몰드베이스	S45C	600	3		0		
		상코어	KP4M	80	3		0		
		⋮					⋮		
		소 계						15,000,000	
	㉡ 노무비	작업명	작업시간 (h)		인원	단가	금액	비 고	
		전극가공	5		1		0		
		⋮					0		
							⋮		
		소 계						10,000,000	
	㉢ 제조경비	내 역						금액	비 고
		시제품 제조에 소요되는 경비 ※ 노무비의 10% 이내						1,000,000	
	㉣ 외주 가공비	품명	용도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와이어 커팅	상・하코어 가공		3		0	외주업체명 ()	
		⋮					⋮		
		소 계						700,000	
		㉤ 일반관리비	내 역						금액
	제조원가 (㉠ + ㉡ + ㉢ + ㉣) 의 7% 이내						1,650,000		
	㉥ 제작기업이윤	내 역						금액	비 고
이윤 (㉡ 노무비 + ㉢ 제조경비 + ㉤ 일반관리비) 의 25% 이내						2,900,000			
합 계							31,250,000		

[서식 제1-4호] (참여기업, 제작기업용) ※ 기업별 제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2025년 인천광역시 시제품개발지원사업 지원 신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 생년월일 • 이메일 • 연락처 • 휴대전화 • 주소 • 회사명 • 부서명 • 직위/직책 • 사업자번호 • 법인번호 • 재무제표 내역
보유·이용 기간	5년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리	(재)인천테크노파크는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는 인천시(군·구 포함)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수집 항목	※ 없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2025년 인천광역시 시제품개발지원사업 신청 증빙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등)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
보유·이용 기간	5년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리	(재)인천테크노파크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는 개인 인증을 위해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또한 미동의 시 증빙서류에 해당 부분을 지우고 제출 바랍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제 3 자	인천광역시,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 선정한 평가위원, 통계분석조사 전문기관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 생년월일 • 이메일 • 연락처 • 휴대전화 • 주소 • 회사명 • 부서명 • 직위/직책 • 사업자번호 • 법인번호 • 재무제표 내역
제공 기간	5년
제공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재)인천테크노파크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기업명 :

신청인(대표자) :

(인)

[서식 제1-5호] (참여기업, 제작기업용) ※ 기업별 제출

【정보제공 동의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 ○
 대표자 ○ ○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서식 제2-1호] (참여기업용) 원가분석결과 제작기업 변경 또는 개발비용 변경 필요시 작성

원가분석 결과 변경 요청서

수 신 자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경 유) 디자인지원센터장

제 목 시제품개발 원가분석 결과 변경요청

당 사는 귀 기관의 원가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당초 제출한 과제신청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 과제개요

과 제 명		개발분야	☐ 금형 ☐ 워킹목업
참여기업		제작기업	기 선정 제작기업

2. 변경내용

변경항목	☐ 제작기업 변경 ☐ 기업부담금 변경 ☐ 제작기업 및 기업부담금 변경				
제작기업 변경	변경 전 기업		변경 후 기업		
기업부담금 변경	원가분석 결정금액	총개발비	시지원금	기업부담금	부가세
		30,800,000원	22,000,000원	6,000,000원	2,800,000원
	변경요청 금액	총개발비	시지원금	기업부담금	부가세
		34,375,000원	22,000,000원	9,250,000원	3,125,000원

첨부 1. 개발비용만 변경 시 : [서식 제3-2호]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 예산계획서 1부

2. 제작기업만 변경 시

2-1) [서식 제2-2호] 기 선정 제작기업 참여포기 확인서 1부

2-2) [서식 제2-3호] 변경 후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1부

2-3) 변경 후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개발비용 및 제작기업 모두 변경 시 첨부파일 1, 2 첨부

참여기업명 :

대표자 :

(인)

[서식 제2-3호] (변경 제작기업용)

변경 후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과 제 명										
제작기업명	(주) 생략			기업형태	☐ 개인 ☐ 법인		대표자명			
대표자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예) 1960.01.01		대표자 핸드폰				
사업자번호	-		법인번호	-		설립일				
주 소	※ 정확히 기재 (과제선정 후 방문점검 예정)					전문분야	예) 사출금형			
과제담당자	부 서			직 위			성 명			
	전 화			핸드폰			E-mail			
개발비용 (단위 : 원)	총 개발비 ① + ② + ③		① 시지원금		② 기업부담금		③ 부가가치세 (① + ②) x 10%			
	예) 34,375,000원		예) 22,000,000원		예) 9,250,000원		예) 3,125,000원			
개발기간	2025년 월 일 ~		2025년 월 일		(총 00일)					

귀 기관에서 통보한 원가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제작기업과 본 사업을 참여하고자 요청하며, 당사의 사정에 의해 시제품제작 과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실패할 경우 귀 기관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작기업/대표자 : (인)

참여기업/대표자 : (인)

- 첨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서식 3-2호] 예산계산서 1부
 3. [서식 3-3호] 추진일정 1부. 끝.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제3-1호] (참여기업, 제작기업용)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 용역계약서

개 발 과 제 명						
개 발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 총 개발비 (㉡ + ㉢ + ㉣)		㉡ 인천시 지원금	참여기업부담금			
			㉢ 기업부담금		㉣ VAT (㉡+㉢의 10%)	
계약 당사자	참여기업명					대 표 :
	제작기업명					대 표 :

위 지원사업 과제 수행함에 있어서 참여기업과 제작기업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제작기업이 위 지원사업의 목적물을 완성하여 참여기업에게 인도하고, 참여기업은 그 대가로서 제작기업에게 보수를 지불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 ① ‘최종결과물’ 이라 함은 시제품 결과물(파트별 금형 몰드 및 코어, 워킹목업 등)을 의미한다.
- ② ‘지식재산권’ 이라 함은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무형의 재산을 의미한다.
- ③ ‘전담기관’ 은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인천테크노파크)을 의미한다.

제3조 (시제품 개발목표 및 내용)

참여기업과 제작기업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 지원과제로 선정된 시제품개발 진행계획서의 내용을 공동으로 추진토록 한다.

제4조 (시제품개발비 지급)

- ① 참여기업은 제작기업에게 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지급시기	비 고
1차 참여기업 부담금 (참여기업 → 제작기업)	예) 금사백육십팔만칠천오백원 (₩4,687,500)	1차 市지원금 지급요청 이전	참여기업 부담액 및 부가세 50%
1차 市 지원금 (전담기관 → 제작기업)	예) 금일천이백오십만원 (₩12,500,000)	1차 市지원금 지급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市지원금의 50%
1차 지급액 합계	예) 금일천칠백일십팔만칠천오백원 (₩17,187,500)		
2차 참여기업 부담금 (참여기업 → 제작기업)	예) 금사백육십팔만칠천오백원 (₩4,687,500)	2차 市지원금 지급요청 이전	참여기업 부담액 및 부가세 50%
2차 市 지원금 (전담기관 → 제작기업)	예) 금일천이백오십만원 (₩12,500,000)	2차 市지원금 지급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市지원금의 50%
2차 지급액 합계	예) 금일천칠백일십팔만칠천오백원 (₩17,187,500)		
총개발비 (1차 + 2차)	예) 금삼천사백삼십칠만오천원 (₩34,375,000)		참여기업부담금 + 市지원금

- ② 참여기업이 기업부담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전담기관은 기 선정된 과제를 선정 취소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기 지급한 市지원금을 환수 조치하며, 참여기업은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인하여 관련된 지원사업에 5년간 참여할 수 없다.

제5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참여기업과 제작기업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보장)

제작기업은 참여기업의 승인 없이는 본 시제품개발과 관련하여 획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7조 (개발결과 및 발생품 등의 귀속)

- ① 참여기업이 제작기업에게 개발비용을 전액(지원비 포함) 납부한 경우 제작기업은 본 개발사업의 수행 중에 발생한 시제품결과물(첨부 3-2호 예산계획서 참조)을 참여기업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 ② 제작기업은 본 시제품개발사업의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서 참여기업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기타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계약자의 해지)

- ① 참여기업과 제작기업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해지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4. 제작기업이 본 개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용역을 거부하거나 용역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완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참여기업이 본 계약(기업부담금 미부담 등)을 위배하여 원활한 개발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연하여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② 기타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전항의 협의 시에 참여기업과 제작기업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9조 (분쟁해결)

참여기업과 제작기업은 제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의 이익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발과정 중 당초계획 대비 초과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부담한다. 단, 제작기업이 참여기업으로 별도의 보고 및 서면 승인 없이 초과 발생시킨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제10조 (전담기관과의 협약내용 준수)

참여기업은 본 개발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체결한 협약내용 및 전담기관의 지원절차를 본 계약에 우선하여 준수하고 제작기업이 이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는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변경)

참여기업과 제작기업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3조 (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지원사업의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기타)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참여기업과 제작기업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 부 : 서식 3-2호 ~ 서식 3-4호 각 1부. 끝.

년 월 일

참여기업 :

제작기업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서식 제3-2호] (참여기업, 제작기업용)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 예산계획서

가. 총개발비 (단위 : 원)

비 목		소요금액	비고	
제 조 원 가	㉠ 재 료 비	원	예) 금형벌수 : 총 3벌 (Left, Right, Top Cover)	
	㉡ 노 무 비	원		
	㉢ 제조경비	원		
	㉣ 외주가공비	원	외주업체명 : OO정밀	
㉤ 일반관리비		원	제조원가 (㉠+㉡+㉢+㉣) 의 7% 이내	
㉥ 제작기업 이윤		원	(㉡노무비 + ㉢경비 + ㉤관리비) 의 25% 이내	
총 계		예) 31,250,000	市 지원금 (80% 이하)	기업부담금 (20% 이상)
			예) 25,000,000	예) 6,250,000

※ 동사업 관리규정 제4장 13조 (사업비 계상) 참조

나. 세부 개발내용 (총 금형벌수 00벌) ※ 금형벌수에 따라 표 추가 또는 삭제 가능

구분	개발이미지	구분	개발이미지
예) Left Cover		예) Right Cover	
구분	개발이미지	구분	개발이미지
예) Top Cover		예) Bottom Case	
구분	개발이미지	구분	개발이미지
예) Button A		예) Button B	

[서식 제3-3호] (참여기업, 제작기업용)

시제품개발 추진일정

일련 번호	사 업 내 용	추진 일정		기간 (일)
		시작일	완료일	
1	예) 금형설계	월 일	월 일	
2	재료발주	월 일	월 일	
3	금형제작	월 일	월 일	
4	⋮	월 일	월 일	
5	⋮	월 일	월 일	
6	⋮	월 일	월 일	
7	금형제작 완료 후 1차 시사출	월 일	월 일	
8	금형수정 후 2차 시사출	월 일	월 일	
9	금형제작 완료	월 일	월 일	
10	결과보고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월 일	월 일	
개발기간 총계 ※ 개발기간 : 총 90일(주말 포함) 이내 (날짜계산기 활용하여 정확히 산출)				90

[서식 제4호] (전담기관, 참여기업용) ※ 전담기관에서 작성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 지원협약서

개 발 과 제 명					
개 발 기 간		년	월	일	총 일
협 약 기 간		년	월	일	2025년 12월 31일
④ 총 개발비 (③ + ⑤ + ⑥)		③ 인천시 지원금		참여기업부담금	
				⑤ 기업부담금	⑥ VAT (③+⑤의 10%)
협약 당사자	전담기관	(재)인천테크노파크			원 장 : 이 주 호
	참여기업	기업명 :			대 표 :

본 지원사업의 과제수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은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4조에 의거하여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이며 과제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제1조 (개발목표)** 「시제품개발 진행계획서」 상 개발목표와 동일하게 추진한다.

제2조 (개발업무 수행)
참여기업은 본 과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전담기관의 지원절차에 따라 본 시제품 개발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비 지급)
① 참여기업은 전담기관에게 본 과제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의 지원금 신청서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거나 개발결과 평가시의 사업비 정산 등에 의거 조정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 1차 지원금: 지원금의 50%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10일 이내 신청
- 2차 지원금: 지원금의 50%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10일 이내 신청
② 참여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작기업의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개발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보고)
① 참여기업은 개발종료 및 최종평가 후 전담기관이 별도 공정한 기한까지 시제품개발에 관한 [서식8호]결과보고서 및 [서식9호]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 비목별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②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 내에 개발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실패”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전담기관은 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고 잔여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관계자료의 제출 등)
참여기업은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개발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및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 (협약의 변경)
전담기관과 참여기업은 합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시제품개발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과 참여기업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1. 시제품개발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추구하는 개발목표가 다른 개발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본 개발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3 참여기업이 전담기관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본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개발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
③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참여기업은 기 수령한 지원금 중 실제로 본 개발 사업에 사용한 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을 전담기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동 보고서에 의거 지원금 잔액을 환수하고 참여기업은 제작기업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업비 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개발사업 수행 중에 발생한 시제품개발의 성과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시제품, 보고서 판권 중 지원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사업 완료시까지 전담기관의 소유로 하되, 참여기업이 참여기업 부담금 전액을 제작기업에 지급하고 이상 없이 사업 완료 시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② 참여기업이 부담금 전액을 제작기업에게 지급한 경우 전담기관은 시제품 개발결과물을 참여기업에 무상으로 양도하여 참여기업이 소유하되, 성과활용 현황보고서 제출기한까지는 타인 또는 타기업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지원금액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제9조 (사후관리)
① 참여기업은 시제품개발 완료 후 상품화 완료시점까지 상품화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이 요구할 경우 그 결과를 개발완료 후 3년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외부조사기관에서 추진하는 성과분석 설문조사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참여 불응시 규정 26조 4항에 의거, 향후 2년 이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참여기업은 시제품개발 완료 후 제작기업과 협의하여 완료된 결과물을 전담기관이 요구할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주최하는 디자인관련 행사 또는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중소기업 디자인갤러리에 전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① 참여기업과 제작기업은 본 시제품개발사업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본 시제품개발이 인천광역시의 지원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지원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해석)
① 본 협약서의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전담기관과 참여기업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 제작기업과 체결한 시제품개발 용역계약서 사본 및 첨부된 문서 각 1부. 끝.

년 월 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인)

참여기업/대표자 : / (인)

[서식 제6호] (참여기업용)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 2차 지원금 지급신청서

수 신 자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경 유) 디자인지원센터장

제 목 시제품개발 2차 市지원금 지급요청

귀 기관과 당사 간에 체결한 지원협약서 제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제품개발 2차 市지원금을 제작기업으로 지급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제개요

개발과제명	
제작기업	
총개발금액	금 원(W) ※ 부가가치세 포함
1차 기업부담금	금 원(W) ※ 참여기업→제작기업 기입금액

2. 사업비 청구내역

1차 지원요청액	금 원(W) ※ 총 시지원금의 50%
제작기업 입금계좌	계좌번호 : (은행) / 예금주 :

※ 위 계좌에 1차 기업부담금 입금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됨

- 첨부 1. 입금계좌의 2차 기업부담금 지급액 입금내역 사본 1부
2. 제작기업에서 발행한 2차 세금계산서(총개발비 50%) 사본(제작기업→참여기업) 1부
3.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계좌 사본 각 1부.
3. 시제품개발 결과보고서(디지털파일 포함)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각 1부. 끝.

참여기업명 :

대표자 : (인)

[서식 제8-1호] (참여기업용)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 결과보고서

인천광역시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지원사업에 의하여 완료된 과제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개 발 과 제 명								
참 여 기 업	/ 대 표 자 :							
제 작 기 업	/ 대 표 자 :							
개 발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 연장기간포함
협 약 기 간	년	월	일	~	년	12월	31일	※ 협약서 참조
총 개 발 금 액	금	원(W			) ※ 부가가치세 포함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대 표 자 :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제8-2호] (참여기업용)

개발결과 세부내역

○ 매출 기대효과 (기업 총 매출 기준)

구 분	수 혜 년 도 (A)	수 혜 후 1년 (B)	증감액(B-A)	증감률
합 계	원	원	원	%
매출(내수)	원	원	원	%
매출(수출)	원 (\$)	원 (\$)	원 (\$)	%
	수출지역 : 00개국 수출국가명 :	수출지역 : 00개국 수출국가명 :	수출지역 : 00개국 수출국가명 :	%

○ 기타 기대효과 (기업 총 재직인원 기준)

구 분	수 혜 년 도 (A)	수 혜 후 1년 (B)	증 감(B-A)	증감률
고용효과	종업원수 : 현재 명	종업원수 : 향후 명	명	%

○ 산업재산권 취득효과

구 분	취득내용	취득증명
☐ 출원 ☐ 디자인 ☐ 상표 ☐ 저작권	출원명	출원번호 기재

○ 과제개요

개발제품의 용도 및 특성	(간략히 3가지 축약) ○ ○ ○
디자인컨셉	(간략히 3가지 축약) ○ ○ ○
C.M.F	(해당하는 내용 간략히 기재) ○ C : ○ M : ○ F :
제작방식	(간략히 3가지 축약) ○ 예시) 공정 : 플라스틱 사출금형 ○ 사출소재 : ABS ○ 금형벌수 : 총 3벌

○ 시제품사진(금형사진을 첨부하되 내부의 코어가 보일 수 있도록 촬영)

[PART 1]	[설명]
[PART 2]	[설명]
[PART 3]	[설명]

※ 시제품(금형)이 여러 부분일 경우 본 페이지를 복사하여 계속 첨부

○ 최종결과물 사진(시제품사출물 및 양산제품)

이미지 삽입
(최종 사출물 조립결과물 또는 양산완료제품)

[서식 제9-1호] (참여기업용)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개발과제명					
참여기업명			대 표 자		
제작기업명			대 표 자		
개발기간	2025년	월	일	~	2025년 월 일 총 00일 ※ 연장기간포함
개발비용 (단위 : 원)	총 개발비 (A + B + C)	A 市 지원금 (A + B의 80% 이하)		B 기업부담금 (A + B의 20% 이상)	C 부가가치세 (A + B) x 10%
	예) 34,375,000	예) 25,000,000		예) 6,250,000	예) 3,125,000

인천광역시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지원사업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발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 첨부 1. 세부정산내역서 1부 [서식 제9-2 ~ 4호]
2. 영수증 사본(재료비 및 외주가공비) 각 1부
※ 비목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끝.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대 표 자 :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제9-2호] (참여기업용)

세 부 정 산 내 역 서

가. 총 괄 ※ 사용금액은 공급가액을 기재 (변동률 : 20% 이하까지만 인정) (단위 : 원)

구 분	당초금액	사용금액	변동률	잔 액	증감사유
1. 재 료 비	15,000,000	17,000,000	13%	-2,000,000	수량 증가
2. 노 무 비	10,000,000	8,000,000	-20%	2,000,000	노무비 절감
3. 제 조 경 비	1,000,000	1,000,000	-	-	
4. 외 주 가 공 비	700,000	700,000	-	-	
5. 일 반 관 리 비	1,650,000	1,650,000	-	-	
6. 제작기업 이윤	2,900,000	2,900,000	-	-	
합 계	31,250,000	31,250,000	100%	0	

나. 세부 개발비 (단위 : 원)

제 조 원 가	㉠ 재료비	재료명	재질	중량(Kg)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몰드베이스	S45C	600	3		0	
		상코어	KP4M	80	3		0	
		⋮					⋮	
		소 계					17,000,000	
	㉡ 노무비	작업명	작업시간 (h)		인원	단가	금액	비 고
		전극가공	5		1		0	
		⋮					0	
							⋮	
		소 계					8,000,000	
	㉢ 제조경비	내 역					금액	비 고
		시제품 제조에 소요되는 경비					1,000,000	
	㉣ 외주 가공비	품명	용도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와이어 커팅	상・하코어 가공		3		0	외주업체명 ()
		⋮					⋮	
		소 계					700,000	
	㉤ 일반관리비	내 역					금액	비 고
		제조원가 (㉠ + ㉡ + ㉢ + ㉣) 의 7% 이내					1,650,000	
	㉥ 제작기업이윤	내 역					금액	비 고
이윤 (㉡ 노무비 + ㉢ 제조경비 + ㉤ 일반관리비) 의 25% 이내					2,900,000			
합 계						31,250,000		

[서식 제9-3호] (제작기업용)

시제품개발 (노무비 및 제조경비) 영수증

개발과제명				
제작 기업	/ 대 표 자 :			
제작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노 무 비	담당자	공정내용	수 령 액	서 명
		합 계		원
제조경비	내 역		수 령 액	비 고
	합 계		원	

노무비 및 제조경비 수령액 : 금 원 (₩)

위 금액을 귀 기관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 시제품 노무비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제작기업명 :

대 표 자 :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